

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건축물	구분	[]다중이용시설 []공공건축물 []기타	
	위치(주소)		
	연면적(m ²)		
조사 결과	조사 일시		
	조사 결과		

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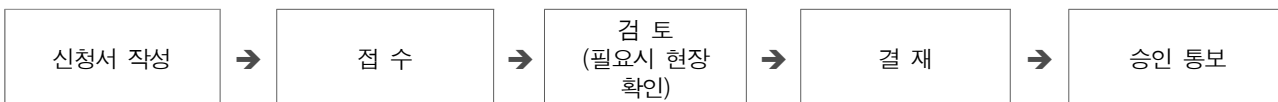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석면조사 결과서 2.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(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석면조사의 항목,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·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(석면관리 담당부서)